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 3. 5.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년 2월 18일
- 나. 제출자 : 김화영 의원 외 7인
- 다. 회부일자 : 2013년 2월 21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7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3. 2. 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화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기업지원 및 육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기업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대상사업 규정(안 제6조 제15조)
 - 기업환경 개선, 창업지원, 마케팅지원,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 기술개발 지원, 특화산업 지원, 기업관련단체의 지원
 - 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예산지원, 기업인에 대한 예우 등
-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5조 ~ 제20조)
 - 기업지원 및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 지급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본 조례는 우리 구에 대기업 및 우량 중소기업, 첨단 벤처기업 등을 유치하고 입주기업에 체계적인 재정과 행정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장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총칙규정으로 용어정의와 적용범위, 기업지원 및 육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2장은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국내·외 우량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도로·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지원에 관한 규정과 창업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및 예산 지원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범위와 기업민원을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업민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제3장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기업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기업지원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업육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다양한 기업지원 활동이 조례에 근거하지 아닐 경우 간혹 「공직선거법」 제86조 등에 의해 기업지원 활동이 제한 받을 수 있음.
- 이와 같은 조례의 근거 없이 무상으로 관내 기업인에게 기술개발 지원 및 사업비 등의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화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5
----------	-----

발의년월일 : 2013년 2월 일

발 의 자 : 김화영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기업지원 및 육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기업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대상사업 규정(안 제6조 ~ 제15조)

- 기업환경 개선, 창업지원, 마케팅지원,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 기술개발 지원, 특화산업 지원, 기업관련단체의 지원
- 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예산지원, 기업인에 대한 예우 등

마.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6조 ~제20조)

- 기업지원 및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다. 합 의 : 지역경제과

라. 자치법규안 : 별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기업유치"란 구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 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구 관할 구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기업의 지원 및 육성

제5조(기업환경 개선) 구청장은 첨단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호텔, 컨벤션 센터, 문화·보육시설,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 가로등, 조경, 공영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창업 지원) 구청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마케팅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기업의 우수 제품 발굴, 홍보사업과 국내, 외 판로개척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소기업인 등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발주 및 입찰, 낙찰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기술개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하 '산, 학, 연'이라 한다)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 기술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인력양성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이나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특화산업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 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 지식 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기업
4. 지역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 효과가 높은 산업

5. 그 밖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사업

제12조(기업관련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기업지원활동을 위하여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기업민원지원센터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기업민원을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민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민원지원센터에는 능력과 자질이 우수한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자의 교육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 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 전시회 등
3.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4.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의 발굴, 홍보를 위한 사업
5.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6. 산, 학, 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
7. 인력양성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의 사업

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비

9.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기업인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3장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제16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기업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
한다.

1.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지원기관 및 기업관련 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4. 육성지원이 필요한 업체선정 및 특정업종의 유치 결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업관련 행정기관 또는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출연기관 임직원
2. 기업인 또는 기업 관련단체 구성원
3. 관계 공무원
4. 영등포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발의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

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 부서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진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